



Samil PwC PE Newsletter

Contents

2025.3

1. Deal Insights	2p
2. Industry Insights	6p
3. Tax & Accounting Issues	8p
4. Deal Pipeline	13p



pwc

삼일회계법인

1. Deal Insights

한국 M&A 시장, 사모펀드 주도권 이어지나

2025년 1분기 한국 M&A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보수적 투자 기조 속에서 사모펀드가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EP의 롯데렌탈 인수, 케이엘앤파트너스의 마녀공장 인수, 유진 PE의 서울전선 인수, CVC 캐피털의 스타비전 인수 등의 사례는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재무 구조 강화를 우선시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들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사모펀드들은 조단위 이상의 잠재적 매물인 CJ 제일제당 바이오그린사업부, DIG 에어가스, 롯데카드, HPSP, SKIET 등의 대형 매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수자로 나서며 M&A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대기업들의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대형 Deal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편, '21~'23년 동안 중소기업 M&A 비중이 거래 건수 기준으로 매년 70%에 달하는 등 여전히 미들마켓에 대한 M&A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Deal의 경우 대기업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Exit 시점에서 적절한 인수자를 확보하는 데 부담이 있으며, 저성장 기조 하에서 확장 전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성장 중인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들마켓에서 유망 기업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력 인프라,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K-뷰티 등 성장 중인 섹터에서 주목받는 유망 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E, 대기업, 중견기업 관련하여 최근 관측되는 M&A의 trend는 다음과 같습니다.

PE: 최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56.2%를 1.6 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모펀드의 대기업 비핵심사업 인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의 지원 가능성에 제거됨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국면에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의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운용자산 기준 상위 30 개 대형사모펀드에 조직도 및 펀드관련 내역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황으로 인해 최근 사모펀드 소유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인수합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활발한 투자 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들은 사업 확장보다는 자산 매각에 집중하며 "몸집 줄이기" 전략에 나섰습니다.

작년('24년) 국내 주요 20 대 대기업 중 절반 가량이 단 한 건의 M&A 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년과 비교해 투자 열기가 식은 가운데, 롯데·GS·KT·카카오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 불황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얹힌 결과로,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M&A 시장은 오히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글로벌 M&A 규모는 작년에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1 조 5960 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2 차전지, 바이오 등 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조차 위축된 상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고금리·고물가로 경기 불황이 심화되어 침체기를 겪었던 Bio & Healthcare(이하 'B&H') 산업은 2025년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맞추어 M&A 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금력이 있는 B&H 기업의 경우에는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바이오 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유지를 위한 인수전략으로, GMP 시설 등을 보유한 중소형 제약사들은 자금조달을 위한 매각전략 등으로 M&A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3 월까지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아름메딕스를, 녹십자웰빙이 이니바이오를, 신라젠이 우성제약을, HLB 그룹이 애니젠 등을 인수하는 등 총 5 건의 B&H 중견기업 M&A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성장 동력

M&A 의 국내외 동향분석'에서 제시한 '24 년 14 건의 M&A 대비하여 1/3 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PwC News & Articles

금융지주회사의 뱌류업과 증장기 성장전략 [삼일 이슈 프리즘]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503053660r>

삼일 PwC “재추진 美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 기업에 기회”

<https://www.fnnews.com/news/202503131428063524>

삼일 PwC “경영진 성과연계 보상, 주주가치 증대의 첫 걸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2726642102664&mediaCodeNo=257&OutLnkChk=Y>

삼일 PwC,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주제 세미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7_0003101586

건설 불황 속 역발상...삼일 PwC, 부동산 전문조직 확장 "3년 내 1위 목표"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18/2025031801233.html

삼일 PwC "美 생물보안법 재추진, 韓 바이오 기업 기회"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3/20250314538793.html>

삼일 PwC “트럼프發 관세리스크, 美현지생산·투자확대로 대응해야”

<https://www.etoday.co.kr/news/view/2451450>

삼일 PwC "침체기 3년 M&A 시장, 하반기부터 회복 전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0408405448726>

삼일 PwC, 중소기업 ESG 지원...'서스테인 허브' 본격 가동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69313i>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겸 PwC 코리아 총괄리더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40748>

강명수 삼일 PwC 센터장 "트럼프 2기 '통상 규제' 전사적 대응 전략 짜야"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503054092r>

Global M&A Industry Trends - 2025 M&A 시장 전망

https://www.pwc.com/kr/ko/insights/samil-insight/deals_trends2025.html

삼일 PwC “양자컴퓨터, 금융·제약·에너지 분야에 영향 커질 것”

<https://www.fnnews.com/news/202503271044445264>

김앤장·UOB 은행·삼일 PwC,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33511>

미국發 대외불확실성 대비...증기부, 관세 관련 정책설명회 나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0006642107584&mediaCodeNo=257&OutLnkChk=Y>

글로벌 투자자가 주목하는 올해 기업 리스크는? 삼일 PwC, 보고서 발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2609123549574>

2. Industry Insights

미·중 무역분쟁의 또 다른 분야, 제약·바이오 산업

‘생물보안법’ 중심으로

- 2025년 1월 13일부터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중국의 기술 수준 부상과 트럼프 2기 정부의 바이오 정책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생물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법안이 미국과 중국 바이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 기업의 포지셔닝을 분석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1. 생물보안법 발의 배경

- 트럼프 1기 행정부(17-'21) 때부터 중국 기업 배제 및 자국산업 보호 움직임 시작됨
- 중국 공산당의 국가보안법은 미국 유전체(게놈) 데이터를 수집, 테스트 및 저장하는 바이오 기업을 포함, 모든 중국 기업이 요청된 모든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중임
- 이에 미국은 법률적 기반 하에 ‘미국인 유전 정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중국을 집중 견제’하고자 2024년 1월 생물보안법을 발의하게 됨

2. 생물보안법 내용

-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 BGI 그룹과 관계사의 국내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임
- 우려 바이오 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백악관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이 법 시행 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함

3. 생물보안법 시행관련 경과 및 전망

- ‘24. 01월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24. 9. 9일 미국 하원을 통과, 연내 시행을 기대하였으나 ‘24. 12월 상원 표결에서 불발됨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기조상 생물보안법 통과 노력은 재차 시도 가능성 높음

4. 생물보안법의 영향 점검_미국, 중국, 한국

- **미국:** 연방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50 만 달러 미만으로 미미하며, 바이오·제약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낮지 않고, 중국 기업을 당장 대체할 적절한 공급선을 찾기 쉽지 않아 업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중국:** 생명과학기업들의 중국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Wuxi Biologics 와 Wuxi Apptec 은 매출 절반 이상 미국에서 창출하는 등 매출 피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2024 Bio USA 에서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남
- 미국은 우시그룹의 가장 큰 고객이자 시장으로, '23년 상반기 매출의 46.3%, '23년 신규 프로젝트의 55%는 북미에서 발생함
- **한국:** 생물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 Wuxi Biologics 는 초기단계 CDO 에 집중하고 있어, 상업화 CMO(삼성바이오로직스 등)보다는 초기단계 CDO 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형 CDMO 기업이 특히 수혜가 클 전망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생물보안법의 본 취지대로 미국과 그 동맹국 중심의 바이오산업 공급망 재편 의지로 인해 압도적 CAPA 확대 능력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탄탄한 트랙레코드, 글로벌 GMP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CDMO 사들이 직간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국의 CDMO 업체 수혜는 곧 한국의 CRO 및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게도 연결되므로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임

5. 시사점 및 제언: 트럼프 2.0 시대의 바이오 산업 전망

- '25. 1 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 기의 바이오 분야 핵심과제는 '규제완화'와 '약가인하'임
- '24. 12 월 불발되었던 '생물보안법'이 '25년에는 상원 통과 기대
-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산업정책은 생물보안법과 같은 중국 견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자국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일 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bio-secure-act.html>

3. Tax & Accounting Issues

Tax: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7 개 개정세법 주요내용

정부는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7개 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조특법	<p>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현행)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형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 (추가) 인공지능 ·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p> <p>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현행) 대 · 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 · 중견 20% 중소 30%</p> <p>③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p> <p>④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2029. 12. 31.)</p> <p>⑤ 2024 · 2025년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024 · 20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기본공제)</th> <th rowspan="2">증가분 (추가공제)</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7</td> <td>12</td> <td rowspan="3">10</td> </tr> <tr> <td>신성장 · 원천기술</td> <td>3</td> <td>8</td> <td>14</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15</td> <td>15</td> <td>25</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7	12	10	신성장 · 원천기술	3	8	14	국가전략기술	15	15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7	12	10																			
신성장 · 원천기술	3	8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p>⑥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감면율 10%)</p>																							
<p>⑦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p>																							

	<p>⑧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p> <p>⑨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시행일 ~ 2025. 6. 30.)</p> <p>⑩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p>
구 분	주요 내용
법인세법 연장	<p>①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 년 (2023. 12. 31. ~ 2026. 12. 31.)</p>
상증세법	<p>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추가</p> <p>②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현행) 6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 (개정) 4 촌 이내의 혈족 · 3 촌 이내의 인척</p> <p>③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 ·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p>
부가세법	<p>①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 용역의 판매 · 결제를 대행 · 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 · 외국법인)까지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체 · 결제대행업체 등</p>
국기법	<p>①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 · 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p> <p>(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 일) 부여 필요</p> <p>(부과액)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 일당 1 일 평균수입금액의 1 천분의 3 이내* *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 일당 5 백만원 이내</p> <p>(감경 · 면제조항) 이행노력 ·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감경 · 면제 가능</p>

Accounting: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SAFE)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하 'SAFE')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 3 조 상 SAFE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SAFE를 통한 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SAFE 사례를 통해 각 상황에서 발행회사의 부채/자본 분류 요건을 검토하고, SAFE에 대한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조건

- 이자와 만기가 없음
- SAFE 투자자에 대한 발행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Triggering event	회사의 의무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 (자동전환)
상장 (IPO) 시 경영권 변경 시	신주발행 또는 투자원금 지급 (투자자가 선택 가능)

- 신주 발행 시 전환가격은 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수량은 투자원금을 하기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에 해당함.

Triggering event	전환가격
후속투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투자자가 선택한 가격 1) 가치한도(*)를 총지분수량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1 주당 가격 2) 후속투자에서 합의된 1 주당 발행가액에 할인율(*)을 곱한 값

상장(IPO) 또는 경영권 변경 시	가치한도(*)를 총지분수량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1 주당 가격
(*) 할인율과 가치한도 조건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자는 신주 발행 시 할인율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치평가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가치한도 이상의 기업가치 상승분(upside)을 향유할 수 있음.	

K-IFRS 제 1032 호에서는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AS 1032.28).

상기 사례에서는 발행시점에 SAFE 투자금에 대한 상환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SAFE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 회사가 그러한 특정 상황의 발생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도 없고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의무도 없어서 동 SAFE 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특정 상황이라도 회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조건부 결제조항 규정 (IAS 1032.25)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게 되므로, 이에 따른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조건부 결제조항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위 사례에서와 같은 각 Triggering Event 별 상황을 회사가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SAFE 발행자인 회사가 특정 상황에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의무도 회피할 수 없을 경우 동 SAFE 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SAFE 의 조건 중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대신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도 포함되므로 전환권에 해당하는 동 내재파생요소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권은 상환금과 미래 기업가치 평가금액에 따라 변동가능한 자기지분상품 수량의 교환으로 결제되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SAFE 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이 아닌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계약으로 회계처리 되며,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검토결과 동 SAFE 가 부채로 판별된 경우, 동 부채는 원금을 상환할 의무인 주계약과 매도콜옵션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에 해당한다. 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으로 식별된 계약조건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SAFE 전체 금액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SAFE 전체가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동 SAFE 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동 SAFE 를 분류해야 하는데 전환 속성으로 인해 통상 주식의 가치에 연동되는 속성을 가지므로 현금흐름 특성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동 SAFE 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K-IFRS 1109.4.1.1~4.1.4)

4. Deal Pipeline

Pipeline 현황

거래규모	거래구조	Industrial	Infra	Consumer	TMT*	Bio	Capital / VC	합계
1,000 억 이상	Buy out	1 건	2 건	1 건	1 건	-	1 건	6 건
	투자유치	1 건	-	-	-	-	-	1 건
	소계	2 건	2 건	1 건	1 건	-	1 건	7 건
500 억 ~ 1,000 억	Buy out	4 건	3 건	2 건	3 건	-	-	12 건
	투자유치	2 건	-	-	1 건	1 건	-	4 건
	기업회생	2 건	1 건	-	-	1 건	-	4 건
	소계	8 건	4 건	2 건	4 건	2 건	-	20 건
500 억 미만	Buy out	31 건	25 건	26 건	19 건	1 건	1 건	103 건
	투자유치	11 건	4 건	10 건	6 건	8 건	-	39 건
	기업회생	15 건	2 건	1 건	-	-	-	18 건
	소계	57 건	31 건	37 건	25 건	9 건	1 건	160 건
미정	Buy out	-	-	1 건	-	-	-	1 건
	소계	-	-	1 건	-	-	-	1 건
합계		67 건	37 건	41 건	30 건	11 건	2 건	188 건

*TMT: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il PwC

조직도 소개



민 준 선

Deals Leader

joon-seon.min@pwc.com

Deals Platform Leader



류 길 주

gil-ju.ryu@pwc.com

PE Service Leader



이 정 훈

junghoon.lee@pwc.com

대기업 Service Leader



곽 윤 구

yun-goo.kwak@pwc.com

Middle Market Service Leader



이 도 신

do-shin.lee@pwc.com

금융 및 부동산 Service Leader



한 정 섭

jeong-seob.han@pwc.com

M&A 센터장



정 경 수

kyungsoo.jung@pwc.com

PE Accounting Partner



김 성 호

sung-ho.kim@pwc.com

PE Tax Partner



김 경 호

gyungho1.kim@pwc.com